

# 의 결



# 국 민 권 익 위 원 회

##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989호

의 안 명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대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의 결 일 2023. 12. 18.

### 주 문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를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에게 각 권고한다.

###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2월 18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권 석 원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뮤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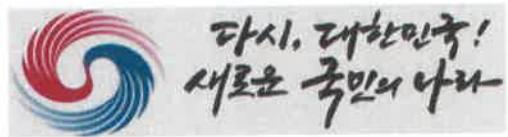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 지>



---

##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

2023. 12.



# ■ 목 차 ■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제도 현황	2
III. 문제점 분석	6
1. 징계심의위 운영 불합리	6
2. 미흡한 징계처분 및 징계처리 지연	10
IV. 개선방안	15
1. 징계심의위 공정성 강화	15
2. 스포츠윤리제도 실효성 제고	19
V. 조치사항	24

# I. 추진배경 및 경과

-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 (국정과제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 □ 추진배경

- 체육인 복지 강화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신고사건을 접수·처리

※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인권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 결정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결정을 지연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111건의 징계를 경기종목단체에 요구하였으나, 이 중 49건만 징계가 결정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 의혹(국회 문체위 김승수 의원 보도자료, '22.10)

- 위반행위별 구체적 혐의수준에 따른 징계수준 결정이 필요하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및 법제상별위원회 규정의 합리성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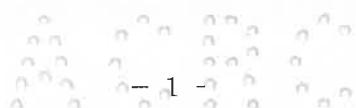
※ 가맹단체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모호, 비위 혐의 임원 징계 관할 문제

- 징계 처리 지연 등에 대한 견제장치는 미흡

- 이에 따라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추진경과

-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23. 9 ~ 10월
- 기관협의 및 위원회 상정 : '23. 11 ~ 12월



## II. 제도 현황

### □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 현황

- (경기단체: 종목·가맹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특정 경기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스포츠 단체

※ 대한체육회 산하 71개 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며,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등록 관리, 국가대표 선발 등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

- (조직) 대부분 공공기관으로 운영 중인 '공공 체육단체'와 달리,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 임직원은 민간인 신분

< 공공 체육단체와 민간 체육단체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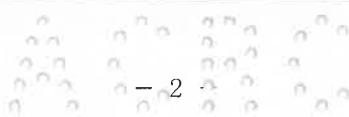
	공공 체육단체	민간 체육단체		
		종목단체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종 류	- 대한체육회 - 지방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지방장애인체육회	- 대한축구협회 - 대한배구협회 - 대한양궁협회 - 대한역도연맹 등 71개 단체	- 대한장애인축구협회 -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 대한장애인역도연맹 - 대한장애인조정연맹 등 32개 단체	
기관형태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사단법인		
임직원 신분	공직자	민간인		

- (예산) 대부분의 종목단체는 정부출연금(기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지원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편성, 인건비 및 사업비를 집행  
- 종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국가지원비율은 40~80%로 상당함

< 민간 체육종목단체 및 가맹단체 수입구조 ('22년)>

(단위 : 백만원)

	대한○○협회	대한△△협회	대한장애인□□협회
정부출연금(기금)	3,922	1,030	-
국고보조금	2,477	898	931(국고+시도보조금)
자체수입	371	2,319	62
전기이월	1,039	54	139
계 (국고지원 비율)	7,810 (81.9%)	4,302 (44.8%)	1,132 (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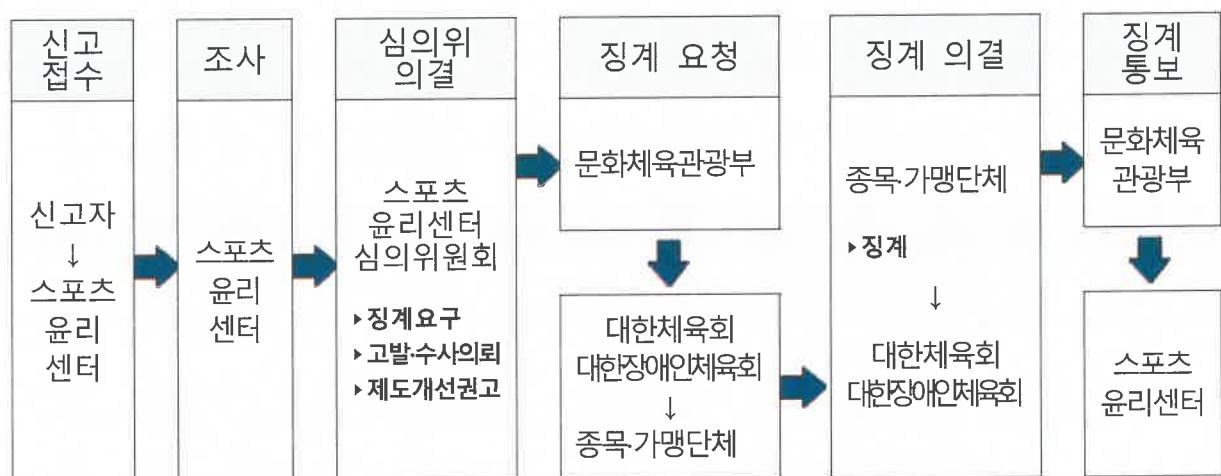


## □ 스포츠윤리 관련 제도

-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인권보호와 체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단체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

- 인권침해(폭력, 성폭력, 괴롭힘, 차별), 스포츠비리(임시비리, 승부조작, 횡령·배임, 조직사유화) 신고 접수, 조사(징계요구, 고발), 사후관리 업무 수행

< 스포츠 비리 사건 처리 절차 >



##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현황

- (징계요구)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신고 접수 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현황은 지난 3년간 224건에 달함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현황 >

징계요구	계	기타 인권침해	폭력	성폭력 성희롱	횡령 배임	조직 사유화	승부 조작	기타 비리	임시 비리
'20년	29	5	10	1	1	4	2	6	-
'21년	81	15	25	10	3	-	2	26	-
'22년	95	11	40	15	3	7	1	18	-
'23년 8월	19	5	7	5	-	-	2	-	-
계	224	36	82	31	7	11	7	50	-

- (미통보 현황) 징계요구 후 체육단체에서 스포츠윤리센터에 관련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109건으로 징계요구건의 48.7%

< 체육단체의 징계요구 미통보 현황 >

징계요구	계	기타 인권침해	폭력	성폭력 성희롱	횡령 배임	조직 사유화	승부 조작	기타 비리	입시 비리
'20년	-	-	-	-	-	-	-	-	-
'21년	6	-	1	2	-	1	-	2	-
'22년	26	4	3	4	1	-	3	11	-
'23년 8월	77	10	32	12	4	6	-	13	-
계	109	14	36	18	5	7	3	26	-

**□ 민간 체육단체 스포츠윤리 분야 징계 제도**

- (스포츠공정위/법제상별위)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관련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제상별위원회'를 운영
  - 산하단체(종목·가맹단체)는 이를 준용하여 개별 위원회를 운영함

< 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 징계 규정 (가맹단체 법제상별위도 유사) >

관련 규정	
징계 종류	경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선수, 심판, 단체임원 별로 달라짐
징계감경 제한	①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 금품수수, ②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 횡령·배임, ③승부조작, 편파판정, ④체육 관련 입학비리, ⑤폭력, ⑥성폭력, ⑦성추행, ※법제상별위는 협소
처리 기한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

-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가맹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별위원회운영규정'을 준용하면서,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요구사항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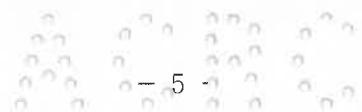
## □ 스포츠윤리 관련 민원 및 지적 사례

### ○ 주요 민원 사례

- < **비리자 처벌 필요** > 정부기관으로서 부정과 비리에는 무엇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비리자 처벌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척결의지는 없고, 묵묵부답이 답이며, 해결기미 또한 보이지 않고 있음 (국민신문고 민원, '20.8)
- < **신고 상담** > 협회 사무국장이 국고지원금 등 예산의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계속 그 직의 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가 많아 시정이 필요함 (신고상담 사례, '23.7)

### ○ 스포츠윤리 제도 운영 부적정

- < **징계결과 통보 업무 처리 부적정** > (성)폭력 등 비위행위를 한 지도자 등이 회원종목단체 등으로부터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등의 처분만 받고, 소속 단체에서는 아무런 처분없이 계속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 략) 지도·감독하여야 함 (감사원 감사결과, '20.2)
- < **성차별·인권침해 지도자에 '징계 요청' 의결** > 스포츠인권 분야 '○○종목 지도자의 성차별 및 인권침해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청' 및 해당 체육회에 대한 '인권 교육' 권고를 의결함 (스포츠윤리센터 보도자료, '22.8)
- < **경영공시 이행 미준수** > 대한장애인△△연맹 회장은 경영공시 항목 중 누락된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과 감사결과를 조속히 공시하여 국민들에게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연맹 운영을 하시기 바람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결과, '23.6)



### III. 문제점 분석

#### 1 징계심의위 운영 불합리

##### □ 민간위원 자격 요건 불명확

-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민간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설정하면서도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은데,
  - 산하 가맹단체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불명확한 자격요건은 민간위원 구성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 스포츠 비리 징계 심의·의결 관련 위원회 위원 구성 >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대한체육회)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p> <p>②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출신 등으로 구성한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p> <p>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 □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이 모호

-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은 징계의 정도를 위반행위별로 규정하면서도,
    - 징계기준을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 등으로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규정
- < 징계기준 (법제상별위 운영규정 제26조 제2항 별표 1) >

징계기준	정의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
경미한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중대한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

- 위반행위별 주요혐의 내용이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

<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별표 1) >

위반행위	주요 혐의내용(중대한 경우)	징계기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

<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이 구체화된 사례 (참고) >

※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 1)

###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기준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증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 □ 임원에 대한 징계를 소속 단체에서 진행하는 불공정

- 산하단체 임원 관련 비위(인권침해,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사건을 해당 산하단체(시·도 및 시·군·구) 스포츠공정위, 법제상벌위가 관할하도록 하여,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이 어려움
  - 전문영역인 체육계 및 협소한 지역사회 특성상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산하단체의 임원급 징계협의자를 분리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곤란

### < 임원 징계 관련 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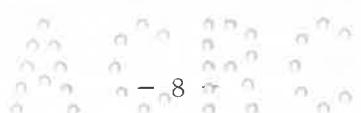
시·도 종목단체 임원 (스포츠공정위: 대한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임원 (법제상벌위: 대한장애인체육회)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⑥ <u>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생략)</u>	제22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4.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만 해당)

<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하는 사례 (참고) >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⑥ (중략)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 □ 징계감경 사유 한계

-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 금품수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체육 관련 입학비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서 중요한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규정은 부재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채용절차 준수 및 매년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 징계감경 제한 규정 >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p>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 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증,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u>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 별표 1, 제1호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 한 금품수수, 제2호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제4호 ~ 제9호 승부조작, 편파판정, 체육 관련 입학비리 등</p>	<p>제26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증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u>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횡령·배임, 성폭력·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u></p>

< 채용비리 관련 징계감경 제한 사례 (참고) >

인사규정 (대한체육회)

제81조(징계의 감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채용비위

## 2 미흡한 징계처분 및 징계처리 지연

### □ 징계혐의 대비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지연·미통보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 제2항에 따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관련한 징계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나,
  - 금품수수, 예산 횡령 등의 범죄를 범하였어도 해당 직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솜방망이 처벌' 무마되는 사례 발생

‣ <체육계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 강화 필요>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20년부터 '22년까지 중징계 29건 포함 총 111건의 징계를 종목단체에 요구하였으나, 최종 징계가 결정된 것은 49건이며, 나머지 61건은 각 종목단체에서 심의 중, 해당 종 목단체에서 제식구 감싸기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신속하게 징계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됨 (국회 문체위 김승수 의원 보도자료, '2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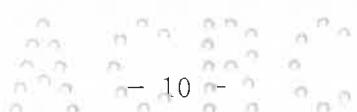
- '20년부터 지난 3년간 징계요구건(224건) 중 체육단체의 징계결과 통보건은 99건인데, 이 중 9건은 결과통보까지 1~2년을 소요하는 등 상당히 지연통보하였으며,
  - '21년 요구건 중 6건, '22년 요구건 중 26건은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음

< 징계처분 결과 통보 기간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23.10월) >

	계	징계요구일 ~ 3개월 이내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미통보	기타 (결정문 보완 중)
건수	224	24	34	32	9	109	16

- 그러나, 체육단체가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요구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단이 없는 실정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단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에 대하여 요구한 징계에 대하여 직접 징계 불가



##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예외에 대한 입법 불비

- 징계수행기관이 징계요구 사건에 대한 조사자료 요청시,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3항 등에 근거하여 자료 제공을 거부

• < 조사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 귀 회에서 요청한 사건번호 관련 심의위원회 안건, 관계자 진술서, 피해자 증빙자료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제3항, 제18조의10 제3항, 제49조의2 등에 의하여 제공하기 어려움 (스포츠윤리센터, '22.7)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 등에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공개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신고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대한 입법사항 불비

< 신고자 비밀보장 관련 법 규정 >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0(신고 · 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제18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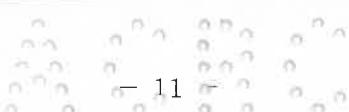
< 신고자비밀보장 의무 예외 관련 법 규정 (참고) >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징계요구시 관련 자료 소극적 통보로 중첩조사 실시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 시 결정문을 제공하고 징계수행기관의 서면요청시 제공동의 받은 문답서 등의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

- 추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한 징계수행 기관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재조사 실시로 혐의자에 대한 징계 절차 지연

<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대상 조사기록 제공 지침 (스포츠윤리센터 예규) >

구분	수사의뢰·고발시 자료 제공	징계요구 등 요청시 자료 제공
필수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결정문</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결정문</li></ul>
제공 가능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공동의 문답서</li><li>▶ 제공동의 증거물</li><li>▶ 그 외의 핵심증거자료</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제공동의 문답서</li><li>▶ 제공동의 증거물</li></ul>
조사기록 제공 절차·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관련자료 송부시 전자결재 회신 문서에 주의사항을 포함하고 관련 조사기록은 <u>전자 문서 불임을 통해 전송</u>* * 필요에 따라 이메일, 등기우편 등 이용 가능</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u>복사·열람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u></li></ul>

< 고발·이첩시 자료제공 방법 관련 지침 (참고) >

###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04호)

제5조(신고 접수절차) ③ 신고자가 (중 략),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공개 포함)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신고사항의 고발) ① 위원회가 (중 략)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중 략) 지체없이 대검찰청 (중 략)에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0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관련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 략)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지체없이 보내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 (생 략),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제21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조치사항) ①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7조제5항,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보내는 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 □ 체육단체 평가 시 미통보 징계건수를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에 대하여 매년 '체육단체 혁신평가' 실시 후 재정지원 등에 활용

- 감점 평가지표로 '공정 및 인권 위반 사례 여부'를 평가하면서,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를 활용하나, 처분 요구건수만 반영하고 징계통보 결과는 미반영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혁신평가 평가지표 (문화체육관광부) >

평가범주	평가지표
	스포츠 비리 근절 및 청렴문화 구축의 적정성(5)
인권 및 윤리 (10)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양성평등 노력의 적정성(5)
	<b>공정 및 인권 위반 사례 여부 (감점)</b>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 ※ 측정방법: 적발건수 대비 감점

-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가맹단체에 대하여 매년 '가맹단체 평가 및 컨설팅' 실시 후 재정지원 등에 활용

- 감점 평가지표로 스포츠윤리센터 등 외부 지적사항 발생 및 후속조치를 평가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평가지표 (대한장애인체육회) >

항목	평가지표
감점 사항	외부 지적사항 발생 및 후속 조치 (감점) - 당해연도 외부 단체(스포츠윤리센터 등) 지적사항 발생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점 ※ 측정방법: 건별 2.0~5.0점씩 감점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 측정방법: 총 지적건수 대비 개선 비율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경영공시 사항 미흡

-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와 가맹단체는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등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공시 형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 자정능력 제고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임원의 업무 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도 하며, '임·직원 관련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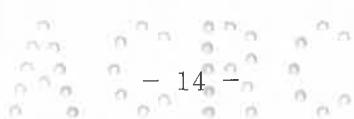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제11조(경영공시) 13호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 홈페이지 경영공시 사항 >

회원종목단체	가맹단체
일반현황 기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팀, 실업팀 현황</li> <li>▶ <u>임원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사용 내역</u></li> </ul>
주요사업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결산서</li> <li>▶ 이사회 결과보고</li> </ul>
대내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평가</li> <li>▶ 감사결과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현황 기관운영</li> <li>▶ 사업결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사업 및 성과</li> <li>▶ 예·결산서</li> <li>▶ 대의원총회, 이사회 결과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내외 평가</li> <li>▶ 감사보고서</li> </ul>

< 경영공시 관련 규정 >

회원종목단체 규정	가맹단체 운영규정
<p>제56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u>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u>, <u>외부평가</u>, <u>감사결과</u>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p>	<p>제50조(경영공시) ① 가맹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u>외부평가</u>, <u>감사결과</u>와 그 외 가맹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p>



## IV. 개선방안

### 1 징계심의위 공정성 강화

#### □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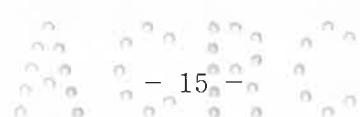
- 법제상별위 운영규정상 불명확한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

- 분야별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기간 적시하여 유능한 민간위원 위촉

< 민간위원 자격 요건 (예시) >

분야	불명확 (현재)	구체화 (개선)
전문가	▶ 법률전문가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체육전문가	▶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권익보호전문가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스포츠 관련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스포츠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현장 전문가	▶ 여성, 장애인 선수 출신	▶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대한장애인체육회)



## □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 법제상벌위 운영규정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징계양정기준을 구체화
- 징계대상자의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화하여 징계처분시 재량권을 축소

⇒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대한장애인체육회)

< 개선안 (예시) >

###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징계의 양정)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 담당자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중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 (뇌물을 받은 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행위 (생 략)

## □ 임원 징계 관할권 상향

### ○ 정실주의 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 민간 종목·가맹단체의 산하단체(시·도 및 시·군·구) 임원과 관련된 비위사건(인권침해,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사건 진행을 해당 민간 종목·가맹단체의 직속 상급단체에서 관할하도록 규정

※ 상급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님

###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개선안 (예시) >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⑥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 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3. 시·도종목단체 임원과 관련된 비위사건(인권침해,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

####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3조의2(징계기관 분류) ① ~ ③ (생략)

- ④ 시·도가맹단체 임원과 관련된 비위사건(인권침해, 스포츠비리)에 대한 징계는 해당단체 위원회가 직접 처리한다.

## □ 징계감경 제한 사유 확대(채용비리, 입학비리)

- 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규정에는 채용비리 혐의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제한하면서도,

- 지도자, 선수관리담당자, 선수, 심판, 단체임원 등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 및 법제상벌위 규정에는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규정 부재
-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를 위해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 법제상벌위 규정에는 '체육관련 입학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를 추가

< 대한체육회 규정별 징계 대상 >

인사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상임임원, 직원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개선안 (예시) >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채용비리,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횡령·배임, 채용비리, 성폭력·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학비리, 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 2

## 스포츠윤리제도 실효성 제고

### □ 징계요구 결과 통보 처리기한 설정 및 설명의무 부과

-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적정한 징계처분을 하도록 유도하는 법령상 제도적 기반 확충이 필요
  - 징계처분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고, 부적정하게 경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이내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 징계혐의 대비 부적정한 징계처분 시에는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근거 자료(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화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 개선안 (예시) >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징계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징계 요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체육단체에 대하여 근거자료 제출 등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예외 규정 신설: 중장기 추진

-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신분공개 금지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자,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이지만,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를 예외 없이 규정할 경우에는 수사의뢰, 고발, 징계요구시 관련 조사기록 등을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등에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역행할 소지 발생
  - 이에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예외 규정의 도입이 필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와 피해자 및 신고와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면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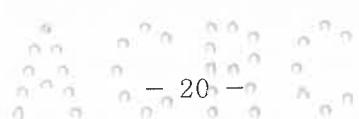
⇒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 개선안 (예시) >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10(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징계요구 관련 자료 제공 방식 합리화

- 추가적인 조사가 최소화되도록 징계요구 관련 결정문 외에 추가 자료의 제공 방식을 합리화
  - '개인정보·조사자료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제공동의 문답서, 제공동의 증거물에 대한 제공방법(파일 송부 등)을 개선
- ※ '제공 가능자료'는 개인정보 및 관련 없는 내용 삭제 등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위반이 없도록 조치

<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대상 조사기록 제공 지침 개선 (스포츠윤리센터 예규) >

구분	현재	개선 (안)
필수자료	▶ 결정문	▶ 결정문
제공 가능자료	▶ 제공동의 문답서 ▶ 제공동의 증거물	▶ 제공동의 문답서 ▶ 제공동의 증거물
조사기록 제공 절차·방법	▶ 복사·열람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자료 송부시 <u>전자결재 회신 문서에 주의사항을 포함하고</u> 관련 조사기록은 <u>전자문서 불임을 통해 전송*</u> * 필요에 따라 이메일, 등기 우편 등 이용 가능 ※ 관련 조사기록 전문문서 불임을 통해 전송시 암호 등 보안 설정

⇒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대상 조사기록 제공 지침'에 반영 (스포츠윤리센터)

## □ 체육단체 평가시 미통보 징계건수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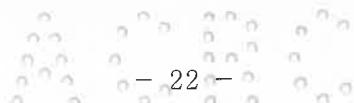
- 산하단체 평가시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요청 사항 중 징계요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건수를 반영

-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혁신평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평가지표'에 감점지표로 추가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혁신평가' 감점 지표로 반영 (문화체육관광부)  
'가맹단체 평가' 감점 지표로 반영 (대한장애인체육회)

< 평가지표 반영 방법 (예시) >

	평가지표	측정방법
회원단체	공정 및 인권 위반 사례 여부 (감점)	<b>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b>  ① (기존) 적발건수 대비 감점 + ② (추가) 징계요구 결과 미통보 대비 감점
종목단체	감점사항	<b>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b>  ① (기존) 적발건수 대비 감점,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비율 + ② (추가) 징계요구 결과 미통보 대비 감점



## □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경영공시 항목 확대

- 경영의 투명성 확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경영공시 항목의 추가 후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필요
  - 산하단체에 대하여 '임·직원 관련 징계제도 운영현황 및 징계 결과'를 공시항목으로 확대하고,
  - 가맹단체는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 공개

⇒ '회원종목단체 규정',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반영

< 개선안 (예시) >

###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56조(경영공시)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임·직원 관련 징계제도 운영현황 및 징계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50조(경영공시)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 임·직원 관련 징계제도 운영현황 및 징계결과와 그 외 가맹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알리오를 통하여 징계제도 운영현황, 징계처분 결과를 경영공시 중

## V. 조치사항

대상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관련기관
징계심의위 공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자격요건을 구체화</li> </ul> </li> <li>○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강화 ※[별표 1]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기준 세분화, 명확화로 징계처분시 재량권 축소</li> <li>☞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li> </ul> </li> <li>○ 임원 징계관할권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 종목기맹단체의 신임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인문체육 스포츠부)를 해당 민간 종목기맹단체의 직속 상급단체에서 관할하도록 규정</li> </ul> </li> <li>○ 징계감경 제한 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비리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li> <li>- 체육관련 입학비리를 추가(장애인체육회)</li> <li>☞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반영,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에 반영</li> </ul> </li> </ul>	대한장애인 체육회
스포츠 윤리제도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요구 결과 통보 처리기한 설정 및 설명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개월 이내 처리기한 명시</li> <li>-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li> </ul> </li> <li>○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예외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자등이 동의시 예외로 하는 규정 도입</li> <li>☞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li> </ul> </li> <li>○ 징계요구 관련 자료 제공 방식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조사기록은 전자문서 불임을 통해 전송</li> <li>☞ '수사기관·징계요구기관 대상 조사기록 제공 지침'에 반영</li> </ul> </li> <li>○ 체육단체 평가시 미통보 징계건수를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요구 결과 미통보 대비 감점</li> <li>☞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혁신평가' 감점 지표로 반영</li> <li>☞ '가맹단체 평가' 감점 지표로 반영</li> </ul> </li> <li>○ 사회적 책임 확보를 위해 경영공시 항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 관련 징계제도 운영현황 및 징계결과 결과</li> <li>-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안카드 사용 내역을 추가(장애인체육회)</li> <li>☞ '회원종목단체 규정'에 반영, '가맹단체 운영규정'에 반영</li> </ul> </li> </ul>	문화체육 관광부  스포츠 윤리센터  문화체육 관광부 대한장애인 체육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 체육회

조치기한 : 2024. 6월 법률개정은 2024. 12월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예외 규정 종장기)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나.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등 불공정에 관한 사항

다. 체육 관련 입시비리에 관한 사항

라.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의5(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또는 진술 청취

2.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정 또는 책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소속 기관·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2.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5.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 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의3(인권침해 등의 조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피해자·피신고자에게 그 사유 및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③ 접수된 사건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화·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 대한체육회 정관 등 관련 규정

### < 대한체육회 정관 >

제7조(회원단체) ①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된다.

② 제1항의 회원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단체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④ 체육회는 이 정관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단체의 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구분에 따른 회원의 자격요건은 체육단체의 규모, 기능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각종 규정의 총괄 관리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포상

3.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 등 단체와 개인의 비위에 대한 징계

4.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5. 제60조에 따른 분쟁의 해결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회원종목단체 규정 >

제6조(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회원종목단체 중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납부한 회비를 체육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종목단체 등의 각종 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 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56조(경영공시) ① 회원종목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 예산집행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원종목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2.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3.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직원은 포상 관련조항에만 적용된다)
4. 대회기간 한시적으로 그 대회의 임원의 지위를 갖는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관리담당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

제3조(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관 제43조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5. (생략)
6. 체육회의 임원과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원 및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도자·선수·심판·선수 관리담당자·운동경기부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체육 분야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8.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 회원시·도체육회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이하 “임원심의”라 한다)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9.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경기, 제도, 단체운영 등)의 조정·중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대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정관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정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임원심의를 심의·의결한다.

1. 대한체육회 임원
  2. 회원종목단체 임원 및 회장후보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및 회장후보자
  3.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 대상자
- 제18조(심의절차) ③ 위원회는 시·도종목단체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의기관으로서 시·도종목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제22조(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8조와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8조 및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원칙) 징계 혐의 성립과 결정은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며, 위원회 및 제22조에 따른 회원종목단체 또는 회원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징계 심사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 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음주운전, 강화훈련 기간 중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6.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의2. 인권 침해, 괴롭힘

7의3. 선거 관련 비위행위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의3까지에 준하는 사건

②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및 회원시·도체육회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 임원, 회원시·도체육회 임원 및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징계한다.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의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체육회 또는 소속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④ 제28조제2항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징계혐의자에 대해 위원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 및 시·도종목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⑥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은 해당 시·도종목단체 위원회가 관할하되, 시·도종목단체 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서 제26조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이 관할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를 직접 처리한다.

1.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와 관련한 비위 사건

2. 회원종목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국대회와 관련한 비위 사건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위원회,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 중에서 징계 관할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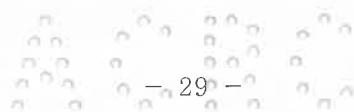
③ 징계 관할로 결정된 해당 단체는 처분요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원회를 소집·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 미구성 등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관할 재심의 기관(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의 경우 체육회, 시·도종목단체, 시·군·구체육회의 경우 회원시·도체육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보고받은 해당 기관은 그 사유를 판단하여 징계관할을 다시 결정한다.

④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단, 회원종목단체가 시·도종목단체로 제28조제2항에 준하는 징계 요구를 하여 시·도종목위원회가 징계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이 되어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제27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그 대상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 또는 선수관리담당자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선수 : 견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심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으로 한정한다),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4. 단체 임원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자격정지, 해임, 제명

5. 운동경기부(학교운동부 또는 직장운동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출전정지

제28조(징계요구) ① 체육회는 징계혐의자와 징계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5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31조(징계의 정도 결정) ①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 공적(功績), 적극 행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으며, 포상 관련 공적(功績)에 대한 감경은 그 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별표 4에 따라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

2. 장관 이상의 표창

3. 대한체육회장의 표창

②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 및 제7호의2부터 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종목위원회, 시·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5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2배 이상으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되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징계의 보고) 제33조에 따라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은 자체 없이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종목단체 및 시·군·구체육회 위원회가 징계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위원회가 보고한다.

제43조(규정 제·개정) ①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의 위원회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이 규정은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4조 (위원회 구성)

2. 제3조·제28조 (기능 추가 관련)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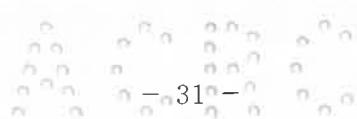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31조제2항 관련)**

1.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금품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 중뢰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② 2년 이상 장기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혐의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③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뇌물을 받은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등)	혐의금액이 5백만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혐의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2.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횡령·배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② 혐의수익을 은닉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혐의수익의 대부분을 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혐의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자격정지
	⑥ 혐의가 발견되기 전 반환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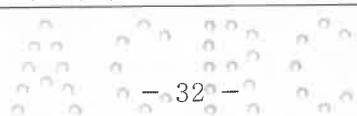


3.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한 권한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인사권 남용 및 채용 비리 사건, 각종 규정 위반행위, 지도자 입장(현장)지도 의무 위반 등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선수관리담당자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권한 남용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권한남용 행위의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 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직무 태만	① 개인 또는 단체의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② 금품수수를 동반한 경우 ③ 무형의 이득을 취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	
		①~⑤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태만 행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④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하여 소극적 으로 가담한 경우 ⑤ 과실로 인한 행위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기타 단체 및 대회 운영 비위 사건(위반행위 1의 금품수수, 2의 횡령·배임, 3의 권한남용 및 직무태만 제외)		견책,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감봉, 강등	

4. 승부조작, 편파판정(경기 내용 및 결과를 조작하거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의로 일방에게 유리한 판정 등을 한 경우)

징계대상		징계기준	
선수관리담당자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①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② 운동경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약속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③ 피감독자를 교사한 경우 ④ ①~③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제명
		①~⑥에 해당하지 않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행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⑤ 승부조작과 편파판정 행위 발각 이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 ⑥ 협박, 강요에 의하여 행위한 경우	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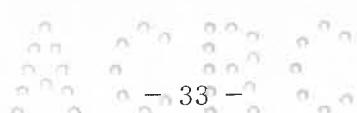


## 5. 체육 관련 입학비리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입학과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록 내지 기록사항을 고의로 조작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행위 ② ①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③ 입학과 관련하여 해당선수, 학부모, 소속학교, 지도자 등 제3자에게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교사하는 등의 행위 ④ 기타 학생선수 선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	제명
	①~④의 경우를 방조하는 행위, ①~④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운동경기부	①~④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미만의 출전정지

## 6. 폭력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직무 정지기간 중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외 매우 비난할 만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제명
	①~③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②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 ③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인 언어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수치심을 유발하는 자극적 표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언어폭력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



## 7. 성폭력(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 중 매우 중대한 경우 포함)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p>①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 행위</p> <p>②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p> <p>③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범행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p> <p>④ 다수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p> <p>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p> <p>⑥ 반복적인 경우</p> <p>⑦ 업무상 위력에 의한 경우</p> <p>⑧ 비난 동기가 중대한 경우(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혐오감에서 추행한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p>	제명

## 8. 성추행 등 행위("7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추행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p>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 키는 일체의 행위</p> <p>아래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성추행 등의 경우</p> <p>성추행 등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성추행 등 행위가 우발적으 로 발생한 경우</p> <p>3년 이상 5년 이하의 자격정지</p> <p>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 상 3년 이하의 자격정 지</p>

## 9. 성희롱 등 행위("7항", "8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희롱 등 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선수관리담당자	<p>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 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 위를 한 경우</p> <p>아래 경우에 해당하 지 않는 성희롱 등의 경우</p> <p>성희롱 등의 정도가 약 한 경우, 성희롱 등 행위 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p> <p>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p> <p>3개월 이상 1년 이하 의 출전정지 또는 3개 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정지</p>

## 10. 인권 침해(정당한 휴식권, 학습권 등) ~ 1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제1항부터 제14항에 준하는 비위 행위 (생략)

##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관련 규정

###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와 시·도 지회를 지원·육성하고 유형별 장애인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가맹) ①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가맹단체”는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 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해당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② 종목별 경기단체라 함은 종목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 ③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라 함은 장애유형별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가입한 단체 중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를 말한다.
- ④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 가맹단체운영규정 >

제 5 조(권리와 의무)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가지며, 장애인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② 가맹단체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가맹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의거해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 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할 수 있고, 가맹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단체는 한국도핑방지규정을 수용하고 준수한다.

제 7 조(평가 및 지위변경)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맹단체에 대하여 각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부진단체는 1회 지정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시 단체 지위 강등, 3회 지정시 관리단체로 지정
  2. 우수단체의 경우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
- ③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50조(경영공시) ① 가맹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가맹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 < 법제상별위원회 운영규정 >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장애인체육회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체육회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회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체육전문가, 권익보호전문가, 여성, 장애인선수출신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9조(상별위원회 설치의무)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와 시·도지회는 해당 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하며, 징계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달리 구분한다.

1. 선수에 대한 징계
  -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 나. 경징계 : 견책
2. 지도자에 대한 징계
  -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지도자만 해당)
3. 심판에 대한 징계
  - 가.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 해당)
4.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 가. 중징계 : 직무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 나.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만 해당)

② 제1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 만료 시까지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제23조(조사 및 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사하여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폭력·성폭력
3. 승부조작, 편파판정
4.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강화 훈련 기간 중), 불법도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기본권 침해, 괴롭힘 등

7.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8.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9. 기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실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징계는 해당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한다.

④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가맹단체, 시도지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3조의2(징계기관 분류) ① 장애인체육회는 중앙 가맹단체가 재심 후 의결한 징계사항 및 시·도지회가 직접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② 시·도 경기단체 및 시·군·구지회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소관 가맹단체 및 시·도지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③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단체 상벌위원회 등은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3조의3(징계요구) ① 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여 해당단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처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양정)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횡령·배임, 성폭력·폭력, 승부조작, 편파판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③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7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④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제8호(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문책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31조(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 ① 제26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확정된 징계와 관련 아래 제4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경, 사면, 복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감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징계절차상의 하자 등 이를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경 등이 있더라도 징계로 인한 기성의 효과는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확정된 징계에 관하여 법원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시에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 등을 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장을 받은 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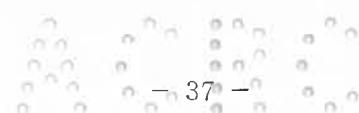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2. 폭력·성폭력



### 3. 승부조작, 편파판정

#### [별표 1]

- 주1) 피해자가 제2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파”를 적용한다.
- 주2) “라. 폭력”, “사. 성희롱 등 행위” 중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는 언어적 혐의로서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된 단순 언어폭력 및 언어적 성희롱에 한하여 적용한다.
- 주3) 성추행과 성희롱의 정의
- 성추행: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 성희롱: 성범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행위
- 주4)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 주5) 음주운전의 ‘경미한 경우’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음주측정 불용 등을 말한다.
- 주6) 음주운전의 ‘중대한 경우’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인적·물적 피해 유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말한다.
- 주7)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 등 개설의 경우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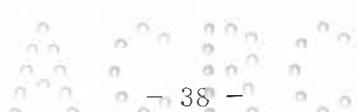
###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징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징계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극히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2) “경미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피해액이 경미한 경우,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말한다.
- 3) “중대한 경우”란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중과실인 경우, 비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한다.
- 4) 단, “2. 개별기준”에 따라 징계 양정 시 아래 위반행위별 ‘주요 혐의내용(예시)’은 “중대한 경우”로 판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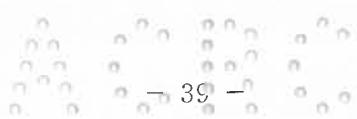


위반행위	주요 혐의 내용(예시)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혐의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 등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심판매수(공여 및 수수)를 통하여 승부조작, 편파판정을 한 경우 등
다. 폭력	운동용기구를 사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운동용기구가 아닌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 상습적으로 폭행한 경우, 2명 이상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 등
라. 성추행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유포한 경우 등
마. 성희롱 등 행위	반복적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 개인의 성적 정보를 유출·유포한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바.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계획적(또는 조직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경우,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등
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 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
아. 기본권 침해 및 과롭힘 등	위반행위 가.~사.에 해당되지 않는 기본권 침해 및 과롭힘 행위 등

다.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 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징계대상	징계기준
가.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금품수수 비위 및 횡령·배임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li> <li>중대한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 또는 제명</li> </ul>
나. 단체 및 대회 운영과 관련된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견책, 1년 미만의 출전정지 또는 1년 미만의 자격정지</li> <li>중대한 경우: 1년 이상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제명</li> </ul>
다. 승부조작, 편파판정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미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li> <li>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해임 또는 영구제명</li> </ul>
라. ~ 파. (생략)		



정본입니다.

2023. 12. 20.

국민권익위원회

